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원범위에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포함〉

■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14호)

2025.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성원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8. 18.
3. 회부연월일 : 2025. 8.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한미군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주한미군 재배치 이후 평택시뿐만 아니라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을 보유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기지 이전과 재배치 과정에서 병력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기반 붕괴, 인구유출, 생활환경 악화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음.

특히, 미군의 이전 후에도 광범위한 공여지가 장기간 반환되지 않음으로써 해당 지역들은 개발제한과 산업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해체와 인구소멸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을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 및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기존 평택시등에 한정된 지원범위를 동두천시 및 의정부시 등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며,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반환·개발 촉진 대책을 병행함으로써 장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안보 기반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법 제명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 및 장기미반환공역 구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제32조의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와 제34조의 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의 대상을 기존 평택시에 더하여 장기미반환공역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기존 평택시 등에 한정된 지원 범위를 동두천시 및 의정부시 등 장기미반환공역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신설).

아울러,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안 제34조의2 신설), 동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9년 연장하여 2035년 12월 31일로 하려는 것임(기존 부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u>	<u>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 및 장기미반환공역 구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	제1조(목적) -----

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
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
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
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
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
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신설>

제32조(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평택시등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주변지역에 체육시설·
공원·도로 및 방음시설 등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이전되는 평택시 등과 계획
대비 15년이상 장기미반환공여구
역이 소재한-----이전지역 및 장
기미반환공여구역 주민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0. (현행과 같음)

11.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
한 지방자치단체”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
에 반하여 15년이상 반환되지
아니하고 있는 공여구역이 소재
한 지방자치단체로서 대통령령
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
한다.

제32조(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평택시등의 장 및 장기미반환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

② (생 략)

제34조(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여구역의 제공으로 인한 평택시등의 재정결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

-----평택시등 및 장기미반
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결합을-----

-----.

제34조의2(「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택시등 및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화체육관

<신 설>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② (유효기간) 이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射倖行爲)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금액의 사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방자치단체의 법안적용 준용)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4조부터 제31조까지의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을 준용하여 지원하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② (유효기간) -----2035년-----.
--	--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인 동두천시와 의정부시는 행정구역 중 공여구역의 비중이 높고, 공여구역으로 인한 개발 억제로 산업기반 열악, 세입 결손, 교육·주거환경 훼손, 인구증가 정체 및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현황>

시·군	기지명	면적(km ²)	반환일시	반환 후 활용계획(발전종합계획)
동두천시	모빌	0.21	미정	유통산업단지, 공원
	케이시	14.15	미정	평화공원, 지원시설
	호비	14.05	미정	복합시니어레저타운
의정부시	스탠리	2.46	미정	도시개발사업 (IT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중)

※ 자료 : 경기도청 북부청사 반환공여구역 홈페이지(<https://www.gg.go.kr/return/main.do>)

특히, 동두천시의 경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이 전체 면적(95.66km²)의 42%(40.63km²)에 이르고 있으며, 공여구역으로 인한 개발 억제로 피해를 받고 있으며,

더욱이 2016년까지 대부분의 미군 병력이 평택시로 이전한다는 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라 동두천시는 반환될 공여구역을 활용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여구역 반환 지연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미군 주둔지가 동두천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정상적인 도시설계 개발의 어려움이 있어 산업, 인구 구조 왜곡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어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고,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공여구역이 조속히 반환되었어야 함에도 장기미반환으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지원을 평택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하려는 입법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관계 법률체계를 살펴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과 공여구역에 대하여는 대상과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음.

먼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행정안전부 소관)이 있음.

다음으로, 평택시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로 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 국방부 소관)이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주한미군 이전지역과 공여구역에 대한 각각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법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관계 부처 입장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관리, 운영,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한미군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행정안전부 소관)」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부동의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동두천시 및 의정부시 등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동 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은 미 측에 신규 공여되는 지역이 아니며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동 법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용곤란 입장임.

□ 카지노업 허가 근거(안 제34조의2)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은 장기미
반환공역구역에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
고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카지노업 유치를 통한
지역 개발 및 관광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
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업은 관광 진흥을 위해 예외적으로만 허
용되는 사행산업으로서 정부가 부여하는 특권적 성격을 지니므로,
허가 시 전국적·종합적 관점에서 검토 필요하고,¹⁾ 사행산업 중 내
국인 카지노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가장 강하고, 도박중
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확대가 우려되므로,²⁾ 부동의한다는
입장임.

□ 참고로, 동법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이미 홍기원의원과 김현
정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들이³⁾ 국방위원회에 전체회
의 상정·소위 회부(2025년 9월 2일)되었음.

문 의 처
02)6788-5304

1) 사회적 공감대, 카지노 시장 상황, 기존 업체 동향, 지역 균형 등 전국 단위의 제반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2) 강원랜드 내국인카지노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지역 경제기반이 무너진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는 것임.

3) 의안번호 9954, 9955. 개정안들은 유효기간을 4년 더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임